

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. 9. 4 선고 2018가단13286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]

전 문

원고1. A

소송대리인 B

2. C

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

피고1. D

2. E

3. F

4. G

변론 종결2019. 8. 21.

판결 선고2019. 9. 4.

주 문

1. 피고들은 각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1/13 지분에 관하여 2010. 10. 30.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최종진

별지